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12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7.

주 문

1.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35,393,440원, 지방교육세 8,240원, 농어촌특별세 18,316,620원, 가산세 89,240,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5. [redacted]구 B, C호(전용면적 244.4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609,300,000원에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273조의2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093,000원, 농어촌특별세 7,827,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13.11㎡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 부분 철거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2015. 8. 4.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이를 반영하여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였다. 이후 원고가 해당 부분을 철거하자 피고는 2017. 3. 9.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0. 위와 같은 무단 증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기준면적 245㎡ 초과)이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증축 부분 포함)의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취득세 235,393,440원, 지방교육세 8,240원, 농어촌특별세 18,316,620원, 가산세 89,240,7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부분에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단으로 증축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 고급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7. 3. 10.에 이루어졌기에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89,240,72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각 규정에 의하면 고급주택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

2) 그런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하면, 원고가 2011. 5.경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부분에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하여 현장 소장인 D 등 위 회사 직원들이 약 2일 정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늦어도 2011. 5. 말경에는 위와 같은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1. 7. 1. 무렵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10.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시점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부분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이를 반영하여 위반건축물로 표기한 2015. 8. 4. 무렵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6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부칙(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끝.